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3211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의자 : 조승래 · 모경종 · 민형배

최혁진 · 김성희 · 박지혜

전용기 · 이기현 · 장철민

임오경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게임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게임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이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 나. (생 략)

<신 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게임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게임이용
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생 략)

4. ~ 7. (생 략)

③ ~ ⑩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